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

제정 2004. 1. 14.

1차 개정 2010. 3. 8.

2차 개정 2013. 3.11.

3차 개정 2014. 2.28.

4차 개정 2015. 1.26.

5차 개정 2016.10. 2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(이하 "주택관리사등"이라 한다)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(이하 "협회"라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,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·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- 제4조(조직) ① 협회는 제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된 사무소이외에 특별시·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명칭을 "시도회"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시도회는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조직을 정할 수 있다.

제2장 사 업

제5조(일반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
- 2.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
- 3.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·교육 및 연수
- 4. 주택관리기술·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
- 5.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
- 6.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유지관리
- 7. 주무부처장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
- 8.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
- 9.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
- 10.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

제6조(특별사업) ① 협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- 1.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·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
- 2.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
- 3.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
- 4.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, 주택관리정보센터, 안전점검센타의 설치· 운영
- 5.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·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
- 6. 에너지절약, 온실가스 저감, 산업안전·보건관리와 공동체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의 교육·홍보 및 실천사업
- 7. 협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에 부대되는 관리·지원사업, 사무실 임대, 기타 평생 교육시설운영 및 전문교육 등의 사업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택관리연수 원 및 연구원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원

제7조(회원) ① 회원은 회원·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다.

- ② 회원은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③ (삭제)
-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사등이 아닌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8조(입회) ① 주택관리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도회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미배치자는 거주지에 따라 시도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.
- ② 주택관리사등이 입회를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소속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.
- ③ 입회절차, 입회비 납입방법, 회원증 발급 및 소속 시도회 변경, 퇴회 및 재입회,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조(회원명부) 협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1. 성명 및 생년월일
- 2.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
- 3. 자격취득 연월일·자격증번호 및 자격구분
- 4. 협회가입 연월일
- 5. 배치이력의 개요
- 6. 교육이수의 개요
- 7. 상벌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- 1.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2.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- 3.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·향유하는 권리
- ② 회원 중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 중 회비가 면제된 회원은 제1항제1호 및 제17조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된다. 다만, 제66조제1항에 따라 회비를 6개월 미만으로 체납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- 1. 법령·정관·제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
- 3. 회비납부
- 4.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제출과 보고이행 및 근무변동에 따른 신고
- 5. 협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
- ② 회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성명·자격명칭·자격번호가 새겨진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회원의 자격상실)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,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.
 - 1.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
 - 2.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
 - 3. 퇴회를 신청한자를 회장이 수리한 때(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퇴회를 포함한다.)
 - 4. 사망한 때
-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하면 입회할 수 있다. 다만,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퇴회자는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입회할 수 있다.
- 제13조(회원의 자격정지 등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제 10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.
 - 1.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 - 2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
제4장 총 회

제14조(설치 및 구성) ①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
-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5조(종류와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- ②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
- 2.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한 때
- 3.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 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
-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·장소·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대의원) ① 대의원의 정수는 400인으로 한다. 다만,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 일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전까지 시도회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,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.
- ③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④ 대의원은 대리할 수 없다.
- ⑤ 대의원 자격·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

- 1.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- 3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4.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5.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
- 6. 시도회의 분할·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
- 7.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
- 8.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
- 제18조(정족수 등)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② <삭제>
- ③ 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 다만,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회장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회장이 아닌 임원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⑤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적용하는 임원의 선임·해임 및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전자투표 및 기타 선거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투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로 본다.
- 제19조(회의록) 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중 5인 이상 이사 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 사 회

- 제20조(설치 및 구성) ① 협회의 회무(會務)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1조(종류와 소집) ① 이사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- 1.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- 3. 감사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
-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
제2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총회의 소집과 제안할 사항
- 2.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
- 3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4.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답에 관한 사항
- 5. 협회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6.<삭 제 >
- 7. 회비 및 수수료의 결정
- 8.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
- 9.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
- 10.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- 11. 상임부회장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
- 12. 고문 및 명예회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
- 13.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14.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

제23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-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. 다만, 대리인은 표결할 수 없다.

제24조(회의록)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임 원

제25조(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회장 1인
- 2. 부회장 6인 이내(상임부회장 1인 포함한다)
- 3. 이사 25인 이내(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)
- 4. 감사 3인 이내
- ② 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,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.
- 제26조(임원선출) ① 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(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)하고,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. 다만,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할수 있다.
- ③ 이사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.
- ④ 회장 등 임원의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(비회원인 상임부회장은 3년 이내)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제28조(임원의 개선 및 보선) 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10 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임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부회장 2인, 감사 1인,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29조(임원의 보수) ①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, 비상근 임원에게는 수당·교통비·판 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된 자
- 2.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3. 임원선출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
- 4.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(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 하지 아니한 자
- 5. 제6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장은 그 재임 중에 있는자
- 6. 본 정관에 의하여 징계를 받거나 임원 사퇴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제31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② 부회장(비상임을 말한다)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부회장(상임을 말한다)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명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협회업무를 분담처리 한다.
 - ⑤ 감사는 협회의 회계·재산상황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,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⑥ 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도회의 감사는 본회의 감사를 보좌하여야 한다.
 - ① 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회장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⑧ 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.
- ⑨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,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.

- 제32조(명예회장 및 고문) ① 회장은 협회발전 및 주택관리제도 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
-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고문이나 제6조에서 정한 사업기관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·노무·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32조의2(제도개선 외부자문단 구성 등) ①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과 공익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·관계·전문가 등으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
- ② 외부자문단의 설치·운영 및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위원회

- 제33조(상설위원회)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
 - 1. 총무위원회
 - 2. 법제위원회
 - 3. 교육위원회
 - 4. 정보화위원회
 - 5. 윤리위원회
 - 6.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
 - 제34조(특별위원회) 협회는 특정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1. 선거관리위원회
 - 2. 예산결산위원회
 - 3. 공제사업위원회
 - 4. 신문 및 간행물편찬위원회

- 5.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
- 제35조(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) ① 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 - ② 각 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, 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·운영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장 시도회

- 제36조(시도회의 설치) ① 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의 행정구역단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회원 과반수의 제안과 총회의 의결로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, 통합·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타 시도회에 소속된 지부의 통합·분할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.
- 제37조(시도회의 구성) ① 시도회에 시도회총회를 두며, 시도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시도회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 단 시도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의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38조(시도회총회의 종류와 소집) ① 시도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② 시도회총회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회장이 소집한다.
- 1. 시도회장이 필요한 때
- 2.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
- 3. 회원(대의원제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. 이 조에서 이하 같다)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
- ④ 제3항의 경우 시도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

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도회장이 기한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시도회총회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 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9조(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)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정관 및 제규정으로 위임받은 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
- 2.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- 3.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의 선출과 해임
- 4. 기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

제4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시도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, 시도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시도회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을 둔다.
- 1. 시도회장 1인
- 2. 시도회부회장 5인 이내
- 3. 운영위원 40인 이내(시도회장·시도회부회장 및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)
- 4. <삭 제>
- ③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는 당해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하며, 시도회장은 선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, 시도회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선임한다.
- ④ 당연직 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41조(운영위원의 직무 등) ① 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를 대표하며, 본 정관 및 제규 정으로 정한 사항과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시도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근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표준 시도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- ③ 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시도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시도회감사는 시도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 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2조(시도회의 보고) 시도회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
- 2. 위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
- 3.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4. 상벌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·예산 및 결산
- 6. 정관·제규정 및 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
- 7. 협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3조(업무의 위임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- 1.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회비의 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제증명서 발급
- 4.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② 시도회장이 시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.

제44조(지부) ① 협회는 시도회 산하에 지부를 둔다.

- ②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,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지부장은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지부총무와 5명이내의 지부간부를 둘 수 있다
- ④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, 지부의 회원관리와 시도회운영세칙에 따라 시도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시도회장이 본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⑤ 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회운영세칙을 준용한다.

제45조(규정의 준용) 시도회총회의 정족수와 회의록 작성은 제18조 및 제19조를, 운영

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3조를,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27조를, 시도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35조를 각각 준용한다.

- 제46조(표준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) ① 회장은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시도회 운영세칙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② 시도회에서 시도회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준시도회운영세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.

제9장 사무기구

- 제47조(사무기구)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, 시도회에는 사무국을 둔다.
- ② 본회의 사무처와 각 시도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, 각 시도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둘 수 있다.
- 제48조(사무총장 등)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.
- ②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시도회 사무국장은 시도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- ③사무총장은 총회,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시도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.
- 제49조(직제와 정원) 사무기구의 직제와 정원·임면·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장 자산 및 회계

제50조(협회의 재산관리) 재산은 법인 명의로 등재 관리한다.

제51조(자산) ①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- 1.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
- 2. 회비
- 3. 사업에 따른 수입
- 4.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- 5. 기타수입
- ②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.

제52조(회비 수입) ① 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.

- 1. 입회비
- 2. 월회비
- 3. 특별회비(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할 수 있다)
- ② 제1항의 입회비·월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회장은 시도회총회에서 의결된 시도회비를 월회비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제53조(경비) 협회의 운영 경비는 입회비·월회비·특별회비와 특별기금·찬조금·자산에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54조(회계)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설치한다.

②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55조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6(회비의 징수 등) ① 회비는 회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- ② 회장은 징수한 입회비·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 회의 교부금으로 지급한다.
- ③ 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때라도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④ 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후 새로이 가입할 때에는 이전에 체납한 회비를 입회비와

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

- 제57조(회비외 수입의 사용) 시도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수입· 찬조금·그밖의 회비 외의 수입은 그 시도회에서 사용하되, 재정운영의 원칙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8조(교육비 및 제수수료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1.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
 - 2. 회원의 필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자
 - 3. 협회에서 개발한 시스템(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) 이용
 - 4. 기타 협회로부터 제반 관리업무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
- ② 제1항 각호의 교육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9조(예산승인) ① 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시도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회장은 제15조제2항의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제60조(예산집행) ① 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시도회에 대한 예산 집행에는 시도회에 대해 특별히 인정한 잉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61조(결산승인)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- 1. 사업보고서
- 2. 재산목록
- 3. 대차대조표
- 4. 세입세출 결산서
- 5.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
- ② 각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회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2조(결산잉여금 처분)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적립 할 수 있다.

- 1. 회관건립에 대한 적립금
- 2. 교육연수원, 정보전산센터, 안전점검센터의 적립금
- 3. 협회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 적립금
- 4. 이사회에서 정하는 협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

제63조(예산회계에 관한 규정)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장 포상 및 징계

- 제64조(포상) ① 회장은 주택관리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사업에 유 공한 인사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5조(회원의 징계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
 - 1.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
 - 2. 회원의 행위가 주택관리사등의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

경우

- 3. 회원으로서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
- 4. 회비를 체납한 경우
-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경고
- 2.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의 정지
- 3.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정지
- 4. 제명
- ③ 협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제66조(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)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- ②회비를 18개월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퇴회 처리한다.
- ③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15일 이내에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, 제2항의 자동퇴회자는 체납회비(18개월)를 납부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제67조(징계절차) ① 회장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조사·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을 조사 및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심의에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시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호의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.
- ⑤ 협회는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또는 각급 기관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⑦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8조(시도회장의 직무정지) ① 회장은 시도회장이 제6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

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및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·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시도회장이 이사를 겸임한 경우에는 이사직도 정지된다.

- ② 시도회장은 당해 시도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에 게 그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69조(자격취소 등의 건의) ①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처분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5항에 의거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건의서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와 징계처분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장 정관의 변경

제70조(정관의 변경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.

- 1.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
- 2.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
- 3. 회원 1/10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
- ② 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.

제13장 보 칙

- 제71조(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) ①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- ② 청산인은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회장이 된다.
- ③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당시의 본 협회를 승계하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, 그 법인이 없을 때에는 해산 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한다.

- 제72조(대리인 선임) 회장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의 사무처리 및 소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제73조(규정 및 세칙)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74조(준용)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4. 1.14)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발기인)이 정관 시행이전에 주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과 창립준비위원 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등) ①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초대 대의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기 전까지로 한다.
-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대 회장의 선출은 종다수원칙에 따라 다수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.
- 제4조(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)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사단법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(이하 "종전법인"이라 한다)의 사원총회("해산총회를 말한다" 이하 같다)에서 의결한 『법정단체의 회원자격취득 및 승계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거 회원자격을 취득·보유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 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법인의 사원총회(해산총회)에서 협회로 그의 모든 권리 및

의무와 채권 및 채무를 포괄승계하기로 의결하고, 민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한 때에는 협회는 주택법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이를 포괄승계 한다.

- 제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종전법인의 해산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되는 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.
- 제6조(경과조치) ①종전법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.
- ②이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과 시도회 초대운영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③종전법인의 지역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설치한 시도회로 본다.
- 제7조(기명날인의 간소화)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시의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과 창립총회 대의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·부회장 및 이사만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부 칙(2010. 3. 8)

- 제1조(시행일) ①이 정관은 주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개정 내용은 2011.1.1부터 제66조 개정내용은 2010.6.1 부터 시행하며, 제27조 개정 내용은 2012. 1.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부터 적용 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①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및 세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.
- ②이 정관 시행 전 회비를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회비를 완납한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 (2013. 3.11)

제1조(시행일) ① 이 정관은 주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준회원은 18개월간 유지된다.

- ②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및 세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.
- ③ 이 정관에 의한 규정 등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규정은 1년 이내에,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은 90일 이내에 각각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.
- ④ 제35조 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위원부터 3년으로 적용한다.

부 칙 (2014. 2.28)

이 정관은 주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1.26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17조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및 세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.

부 칙 (2016. 10. 20.)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